

#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

- 연말정산 시기: 계속근무자 ▶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(소득세법 §134, §135 원천징수시기 특례 포함 신고·납부)  
※ 2026.3.10.까지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신청 (반기 납부 신고자도 가능)
-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: 근로·사업·퇴직소득, 종교인소득(3월 10일), 그 외(2월 말일)

## 총급여액

(연간근로소득·비과세소득)

➔ 근로소득공제  
(한도 2,000만원)

## 근로소득금액

(총급여액-근로소득공제)

➔ 인적공제  
(p.95)

➔ 연금보험료공제

➔ 특별소득공제  
(p.105)

➔ 그 밖의 소득공제

과세표준 (기본세율 6~45%) × 산출세액

➔ 세액감면

➔ 세액공제

## 표준세액공제(13만원)

특별소득공제·특별세액공제·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

## 결정세액

➔ 기납부세액

➔ 납부 또는 환급세액

총급여액 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70%
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	350만원 + 500만원 초과액의 40%
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	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액의 15%
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액의 5%
1억원 초과	1,475만원 + 1억원 초과액의 2%

기본공제 (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자 본인 및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, 부양가족: 1인당 150만원</li> <li>직계존속: 만 60세 이상(1965.12.31.이전 생)</li> <li>직계비속(동거 입양자 포함): 만 20세 이하(2005.1.1.이후 생)</li> <li>형제자매: 만 20세 이하, 만 60세 이상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추가공제 (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·장애인·부녀자·한부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로우대 공제: 만 70세 이상(1955.12.31.이전 생) 1인당 100만원</li> <li>장애인 공제: 1인당 200만원</li> <li>부녀자 공제: 50만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</li> <li>한부모 공제: 100만원(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우선 적용)</li> </ul>
--	--

연금보험료공제(p.103) ● 국민·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교직원·별정우체국연금: 본인 부담액 공제

보험료	● 국민건강보험료·고용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: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
주택자금(p.107) 공제산식: ㉠+㉡ (㉠, ㉡ 외국인도 공제 가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%</li> <li>㉢ 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40%</li> <li>● 한도: ㉠+㉡ = 400만원, ㉠+㉡+㉢ = 2000만원·1800만원·800만원·600만원</li> <li>* ㉠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※ 뒷면 참조</li> </ul>

㉢ 주택마련저축(p.122) ● 청약저축·주택청약종합저축(연 300만원 이하), 근로자주택마련저축(월 15만원 이하)  
● 공제액: 납입금액의 40%(한도: 상기 주택자금공제 한도 참조) \* 총급여 7천만원 이하

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●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(한도: 600만원·500만원·400만원·200만원)  
●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(2016년 이후 가입분)

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● 투자액의 10%를 투자일로부터 2년내 과세기간 선택 공제(한도: 종합소득금액 50%)  
● 벤처기업 직접투자액 3천만원 이하 100%,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%, 5천만원 초과 30%

신용카드 등(p.132)	● 총급여액 25%를 초과하는 금액의 15%~40%공제(※ 뒷면 참조)
우리사주조합 출연금	●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(한도: 400만원, 벤처 1,500만원)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로부터 10년간(청년형의 경우 계약기간 중) 납입액의 40%공제(한도: 240만원)
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	● 임금삭감액(직전 임금총액 - 당해 임금총액)의 50%공제(한도: 1,000만원)

중소기업취업자 감면(p.150)  
(청년 90%, 청년 외 70%) ●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(청년 5년)(연 200만원 한도)  
● 대상: 청년(만 15세~34세), 청년 외(60세 이상자, 장애인, 경력단절 근로자)

기타세액감면 ●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●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 
● 중소기업 청년근로자·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(내일채움공제)

근로소득세액공제(p.162) ● 공제액: 산출세액 55%(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은 30%)  
● 한도: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이하(74만원), 7천만원 이하(66만원), 1억2천만원 이하(50만원), 1억2천만원 초과(20만원)

혼인세액공제(p.163) ●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공제(생애 1회, 2024~2026년 혼인신고자)

자녀세액공제(p.164) ● 자녀 1명(25만원), 자녀 2명(55만원), 자녀 3명 이상(55만원+2명 초과 1인당 40만원)  
\* 자녀세액공제 대상: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  
● 출생·입양 세액공제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

연금계좌(p.164)  
(12%·15%) ● 연금저축계좌 납입액(한도 600만원) ● 퇴직연금계좌 납입액(한도: 연금저축액포함 900만원)  
\* 총급여액 5천5백만원(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) 이하 15%,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12%

보험료(12%·15%)(p.170) ● 보장성보험료(저축성 제외, 한도 100만원) 12% ●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(한도 100만원) 15%

의료비(p.173)  
산식: (㉠+㉡)×15%·20%·30% ● ㉠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산정 특례자(15%),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(20%), 난임시술비(30%)(한도 없음)  
● ㉡ ㉠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- 총급여액 × 3%(한도 700만원)  
\* 단 ㉡의 의료비 < 총급여액 × 3% 인 경우, 그 미달금액을 ㉠에서 차감 후 15%·20%·30% 적용  
\* 산후조리원비용(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), 시력보정 안경·렌즈(1인당 연 50만원 이내)

교육비(15%)(p.178) ● 한도: 본인(전액, 대학원·학자금대출상환액 포함), 대학생(1인 900만원, 대학원 제외), 취학전아동·초·중·고교생(1인 300만원), 장애인 재활교육 목적 특수교육비(전액, 직계존속 포함)

기부금(p.186)  
(100/110·15%·25%·30%) ● 공제율·공제순서:  
① 정치자금(100/110, 10만원 초과분 15%, 3천만원 초과분 25%)  
② 고항사당(100/110, 10만원 초과분 15%, 특별재난지역 30%, 한도 2,000만원)  
③ 특례·④ 우리사주조합·⑤ 일반(15%, 1천만원 초과분 30%)  
● 한도: 특례(근로소득금액-①-②) × 100%, 우리사주조합(근로소득금액-①-②-③) × 30%, 일반(종교단체無) ㉠ × 30%, 일반(종교단체有) ㉠ × 10% + MIN(㉠ × 20%, 종교단체외기부액)  
\* ㉠ = 근로소득금액-①-②-③-④

월세액(15%·17%)(p.202) ● 대상: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)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액(연 1천만원 한도)  
● 공제율: 15%(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자) 17%)

※ 본 자료는 세법 상 공제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및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*【소득·세액 공제요건】**

구분	공제요건				
	나이요건	소득요건 <sup>1)</sup> (100만원 이하)	동거요건		
			주인등록동거	일시퇴거 허용	
기본 공제 (p.96)	본인	×	×	×	
	배우자	×	○	×	
	직계존속	60세 이상 (65.12.31. 이전)	○	△ (주거형편상 별거 허용)	
	직계비속, 동거입양자	20세 이하 (05.1.1. 이후)	○	×	
	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	×	○	×	
	형제자매	60세 이상 20세 이하	○	○	○
추가 공제 (p.97)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×	○	○	
	위탁아동	18세 미만(원칙)	○		
	장애인(200만)	×	○		
	경로우대(100만)	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(55.12.31. 이전 생)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)			
특별세액 공제 (p.159)	부녀자(50만)	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가족(20세 이하)이 있는 자 *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공제 우선 적용			
	한부모(100만)	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가족(20세 이하)이 있는 자 *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공제 우선 적용			
	신용카드 등 (p.132)	×	○	형제자매 제외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	
	자녀세액공제 (p.164)	기본 출산 ○(8세 이상) '25.1.1. 이후 출산·입양 신고	○	기본공제대상 자녀(손자녀 포함)	
표준세액공제	보장성보험료	○	○	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	
	의료비	×	×		
	교육비	×	○		
	기부금 <sup>2)</sup>	×	○		
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,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(13만원) 적용					

1) (소득요건)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  
2) 정지자금기부금, 고행사상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급분만 공제 가능(이월공제)

**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】 p.132**

구분	내용		
공제 대상자	① 근로소득자 본인 ② 기본공제대상자(형제자매 제외)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소득제한○, 연령제한×)		
공제율	구분	공제율	
	① 신용카드(②,③,④,⑤제외)	15%	
	②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(③,④,⑤제외)	30%	
	③ 도서·공연·미술관·박물관·영화관람료, 수영장·체육단련장 등	30%	
	④ 전통시장	40%	
⑤ 대중교통	40%		
* ③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하며, 수영장·체육단련장은 '25.7.1.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 가능함			
공제 금액	공제액 = [(㉠의 사용액 - 총급여액의 25%) × 15% ~ 40%] ① 신용카드등사용금액(중고차 구입액의 10% 포함) = 신용카드 + 현금영수증 + 직불·선불카드		
한도액	구분	총급여 7천만원	
		이하자	초과자
	전제 한도(①+②)	600만원	450만원
	기본 한도(①)	300만원	250만원
추가 한도(②)	300만원	200만원	
* 전통시장+대중교통+도서·공연·수영장 등			
공제 제외	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,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		
	②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료 또는 공제불입금		
	③ 초·중·고·대학·보육시설 등 수업료 및 납금금 ※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		
	④ 조세, 전기·수도·전화·가스료, TV 시청료, 아파트관리비, 도로통행료		
	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, 자동차대여사업의 리스료(대여료 포함)		
	⑥ 자동차 등 취득세·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(중고차는 10% 가능)		
	⑦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은 금액,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기부금		
	⑧ 가상자산의 매도·매수·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		

**【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용금액 중복적용 여부】**

구분	특별세액공제 항목	신용카드공제
의료비	의료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가능
보장성 보험료	보험료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불가
학원비	취학전 아동	교육비 세액공제 가능
	그 외	교육비 세액공제 불가
교육구입비	교육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가능
기부금	기부금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불가

\* 취학전 아동의 경우 주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,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

**【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】**

구분	그 밖의 소득공제	소득공제(특별소득공제)		세액공제
	①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조특법 87조② (p.122)	㉠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52조④ (p.108)	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세법52조⑤ (p.110)	㉢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조의2 (p.202)
공제 대상	•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주와 그 배우자로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(세대주 여부: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)	•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• 국민주택규모 주택 • 대출기관(보통청 포함)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※ 외국인 공제 가능	•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• 취득시점시가 6억 이하 (24.1.1. 이후 취득분) •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※ 외국인 공제 가능	•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• 국민주택규모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※ 외국인 공제 가능
기타	세대주인 근로자 및 배우자 본인 명의 납입분만 공제가능	세대원이 공제 가능한 경우(아래 요건 외에 다른 공제요건 모두 충족시) ①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(㉠·㉡·㉢)를 받지 않고 ② 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주택에 ③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것		
요건	• 청약저축 연 300만원 이하 납입액 •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300만원 이하 납입액 • (폐지된)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(월 15만원 이하)	1) 대출기관 차입시 입주일, 전입일(갱신, 이주 포함)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2) 거주자(개인) 차입시 총급여 5천 이하 근로자가 전입일 등부터 1개월 내에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3.5% 이상 이자율로 차입	•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 3월 이내 차입 •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• (대환)이전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차입금을 직접 상환하거나,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(상환기간이 최초차입일로부터 15년 이상)	• 총급여 8천만원 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) 이하자 •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•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(전입신고)
대상 주택	(~09년 기입한 청약저축의 경우) 가입당시(가입 후 주택취득시 취득 당시) 기준시가 3억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소유 시에도 공제가능	• 국민주택규모 주택 •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	• 규모요건 : X(14년부턴) * 취득당시 기준시가: 6억 이하 (19~23년 차입: 5억!) (14~18년 차입: 4억!) (13년 이전 차입: 국민주택 규모 + 기준시가 3억!) • 오피스텔 제외 • 분양권 가능(무주택자)	•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• 주거용 오피스텔·고시원 포함 • 임대차계약증서의 임차계약 주택 가능(근로자 본인이 월세부담 및 전입신고)
공제 금액	납입액의 40%	원리금 상환액의 40%	이자상환액 전액	월세액의 15% (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 17%)
공제 한도	합계액(㉠+㉡) 연 400만원 한도			월세액 연 1,000만원 한도
	㉢의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른 전제 한도(㉠+㉡+㉢) • 10년 이상 15년 미만 + 고정금리 or 비거차치 분할상환: 600만원 • 15년 이상 + 고정금리 + 비거차치 분할상환: 2,000만원 • 15년 이상 + 고정금리 or 비거차치 분할상환: 1,800만원 • 15년 이상 + 기타 상환방식: 800만원			
증명 서류	•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	•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• 주민등록표등본 • (거주자 차입시) 임대차계약서, 금전소비대차계약서, 계좌이체 영수증 등 지급증빙 서류	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• 주민등록표등본 • 주택가액 등 확인서류 (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)	• 주민등록표등본 • 임대차계약서, 계좌이체 영수증 등 지급증빙 서류
주의 사항	• 과세연도 중 주택담청 및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X	• 임대차계약서는 공제 받는 자 명의로 작성 및 상환 • 법인, 각종공제회 차입금 제외	• 주택수 포함: 무허가 주택, 사업용·판매목적 주택, 공동소유주택 (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경우)	•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불가(납세자 선택) • 국가용 월세지원액은 공제 제외됨

**【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www.hometax.go.kr)】 p.375**

- 서비스 오픈 일정 2026.1.15. 이후 제공 예정
- 2025년 귀속 주요 개선 내용  
소득금액기준 100만원(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화·다운로드 기능 미제공\*
- ① (근로) '25.1~6월 발생 소득(사업·기타·양도·퇴직) '25.1~10월 제출 소득
- ②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는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자료 제공  
- 의료비: 소득기준 제한 없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 
- 12.31.이전 혼인·이혼·취업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공제 가능하여 자료 제공(소득세법59조의4②,⑤)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근경로  
○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 간소화
- 제공되는 소득·세액공제 항목  
○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, 주택자금 등 자료 제공
- 부양가족의 공제 조회 방법  
① 19세 미만 미성년자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동의 없이 조회 가능(근로자의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)  
② 19세 이상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동의 신청 후 조회 가능
- 자료 제공동의 신청 방법  
① 홈택스 홈페이지: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/조회/취소 → 본인인증 신청 or 온라인 신청 or 팩스 신청  
② 손택스(모바일):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제공동의 신청/취소  
③ 사무서 방문: 제공동의 신청서 제출  
※ 제공동의 시 부양가족 신분증·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필요